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8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정동만·김선교·김상욱

이달희 • 김은혜 • 김위상

백종헌 · 강민국 · 엄태영

김석기 · 최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을 도입하고 공개청원과 청원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과 같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부개정한바 있음.

그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원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을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개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

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4조)

공공기관이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나.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6조)

청원심의 또는 청원 처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함 으로써 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청원심의회 운영의 효율화(안 제8조제1항)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청원심의회를 별도로 설 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기관 등에 설치된 청원 심의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공개청원 절차의 간소화(안 제13조제1항)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대하여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공개 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

마. 반복 이송되는 청원의 소관기관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이 른바 '핑퐁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기관 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바. 반복청원의 종결처리 절차 간소화(안 제16조제1항)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원에 대한 종결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령"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로한다.

3. 공공기관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6조제1호 중 "국가기밀"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 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제4 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청원기관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과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접수일"을 "접수일(제15조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완료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공개 부적합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이송된 청원의 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청원의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2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건"으로, "알려야"를 "1회이상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제4조(청원기관)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u>특수법인</u>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
	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법인·단체 또는</u>
	<u>기관</u>
<u>3</u> . <u>법령</u> 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	<u>4</u> . <u>법령 또는 자치법규</u>
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	
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 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 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에게 알려야 한다.

1. <u>국가기밀</u> 또는 공무상 비밀 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 (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
<u> 거나 국가기밀</u>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청원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
<u>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제4</u> 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청원기
관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상급기관(지방공
<u>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u>

1. ~ 3. (생략) ② (생략)

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 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 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지방공사 ·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과 협 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 정 통지 등) ① -----(제15조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에는 보완완료일)----------. 다만, 청원기관 의 장이 공개청원에 공개 부적 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 개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이송된 청원의 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 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 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 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신속하 ②·③ (생 략)

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청원의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2건</u> -
1회 이상 알려
of
 ②·③ (현행과 같음)